판결·지급명령 강제집행 서류 확인표

유형: 준비서류 안내 / 집행권원 종류별 확인표

먼저 가진 문서의 종류를 확인하세요

- 판결: 판결 주문과 확정 여부 또는 가집행 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.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의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준비하고, 판결의 송달을 확인합니다. 확정판결인지 가집행판결인지에 따라 확정증명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확정 지급명령: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·확정 상태를 확인합니다. 민사집행법 제5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합니다. 다만 법이 정한 조건부 집행·당사자 승계 등의 예외에 해당하면 집행문이 필요합니다.
- 조정조서·화해조서·공정증서 등: 판결 또는 지급명령의 서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각 집행권원의 집행요건과 필요한 정본을 따로 확인합니다.

공통으로 정리할 자료

- 집행권원 전체와 당사자 표시: 성명·법인명, 주소, 주문과 별지의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송달 및 확정 관련 증빙: 집행권원의 종류와 집행 방식에 따라 송달증명원·확정증명원 등 실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.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을 확정판결과 혼동하지 않습니다.
- 청구액 계산: 원금·지연손해금·이미 받은 돈과 그 날짜를 판결 주문 또는 지급명령에 따라 계산합니다. 소송비용의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 근거를 별도 확인하고,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도 구분합니다.
- 대상 재산 자료: 은행·직장·거래처 등 제3채무자 표시 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신청할 집행수단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.
- 선행 사건: 가압류·압류·경매 사건번호와 결정문, 다른 채권자의 우선권이나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합니다.

제출 전에 사건별로 한 번 더 확인

- 채무자에게 송달이 이뤄졌는지, 집행권원에 조건이 붙었는지, 채권자·채무자의 승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. 이행기·담보제공·동시이행 조건이 있다면 해당 선행 요건을 충족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.
- 예금채권 압류는 은행인 제3채무자와 압류할 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. 부동산 집행은 소유관계와 선순위 권리·집행비용을 함께 검토합니다.
- 집행서류를 갖췄더라도 대상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이 안내는 신청 전 확인용입니다. 법원 제출용 공식 양식이 아니며 사건의 집행권원과 신청 수단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.

공식 근거: 민사집행법 제28조·제30조·제39조·제40조·제41조·제53조·제58조 https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68837 ; 민사소송법 제110조 https://law.go.kr/lsLinkCommonInfo.do?chrClsCd=010202&lsJoLnkSeq=1032308157

자료 확인: 2026-10-03.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대조했으며 법원별 제출 방식은 신청 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